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11.25.(금)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11.25.(금) 08:50
담당 부서 <총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영실 (043-913-4250)
		담당자	선임공무직 김승태 (043-913-4256)
			기술공무직 방형원 (043-913-4261)
담당 부서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은진 (043-719-8140)
		담당자	보건연구사 김정민 (043-719-8143)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생물안전평가과	책임자	과 장 신행섭 (043-719-8040)
		담당자	보건연구사 오경환 (043-719-8044)

오미크론 변이주 BA.2.75.2 등 신규 세부계통 4주, 11월 25일부터 분양 개시

주요 내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신규 세부계통 4주 분양 개시

○ 신규 분양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 : BA.2.75.2, BF.7, BJ.1, BQ.1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바이러스 자원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보유 또는 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기관, 핵산 자원은 실험 목적에 맞는 생물안전 등급 시설 필요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최근 국내에서 새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신규 세부계통 4주***를 **11월 25일(금)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A.2.75.2, #NCCP 43419)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F.7, #NCCP 43420)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J.1, #NCCP 43421)

* 오미크론 변이주(SARS-CoV-2 GRA: BQ.1, #NCCP 43422)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신규 변이주 포함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자원은 총 53주**(붙임 1 참고)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안내 : http://nccp.kdca.go.kr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안내 : http://is.kdca.go.kr

-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

-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 : 생물안전 1등급(BL1)
·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 : 생물안전 3등급(BL3)
· 핵산 분석 및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외 실험 :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의 실험실

*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한 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신규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의 분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이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제제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 및 산업에 원천물질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분양 문의 : 043-913-4260, 4261
◇ 온라인분양창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913-4257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 분양 가능 자원 현황(2022. 11. 25. 기준)

일련번호	유전형(GSAID)		WHO명칭(계통)	구분	NCCP No.	소계
1	S		A		43326	5
2	S		A		43327	
3	S		A		43328	
4	S		A		43329	
5	S		A		43331	
6	L		B		43330	1
7	V		B		43342	1
8	GR		B.1.1		43343	1
9	G		B.1		43344	1
10	GH		B.1.497		43345	1
11	GV		B.1.177		43346	1
12	변이주	G	에타 B.1.525	VOI	43386	1
13			카파 B.1.617.1	VOI	43389	1
14			기타 B.1.619	FMV	43403	1
15			기타 B.1.619.1	FMV	KV41	1
16			기타 B.1.619.1	FMV	KV44	1
17			기타 B.1.620	FMV	43404	1
18		GH	베타 B.1.351	VOC	43382	1
19			입실론 B.1.427	VOI	43384	1
20			입실론 B.1.429	VOI	43385	1
21			아오타 B.1.526	VOI	43387	1
22			뮤 B.1.621	VOI	43407	1
23		GK*	델타 B.1.617.2	VOC	43390	1
24			델타 B.1.617.2 K417N	VOC	43405	1
25			델타 AY.1	VOC	43406	1
26			델타 AY.69	VOC	43409	1
27			델타 AY.69	VOC	KV42	1
28			델타 AY.69	VOC	KV43	1
29			델타 AY.69	VOC	KV45	1
30			델타 AY.69	VOC	AV41	1
31			델타 AY.69	VOC	AV42	1
32			델타 AY.69	VOC	AV43	1
33	변이주	GK*	델타 AY.69	VOC	AV44	1
34			델타 AY.69	VOC	AV45	1
35			델타 AY.122	VOC	43410	1
36		GR	감마 P.1	VOC	43388	1
37			제타 P.2	VOI	43383	1
38		GRY	알파 B.1.1.7	VOC	43381	1
39		GRA	오미크론 BA.1	VOC	43408	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일련번호	유전형(GSAID)	WHO명칭(계통)	구분	NCCP No.	소계
40		오미크론 BA.1.1	VOC	43411	1
41		오미크론 BA.2	VOC	43412	1
42		오미크론 BA.2.12.1	VOC	43423	1
43		오미크론 BA.2.3	VOC	43424	1
44		오미크론 BA.4	VOC	43425	1
45		오미크론 BA.5	VOC	43426	1
46		오미크론 BA.2.75	VOC	43417	1
47		오미크론 BA.2.75.2	VOC	43419	1
48		오미크론 BF.7	VOC	43420	1
49		오미크론 BJ.1	VOC	43421	1
50		오미크론 BQ.1	VOC	43422	1
51		오미크론 BA.4.6	VOC	43418	1
52	파생물질	SARS-CoV-2 E gene 합성 RNA		76117	1
53		SARS-CoV-2 N gene 합성 RNA		76118	1
합계					48

* VOC(Variants of concern), VOI (Variants of interest), FMV (Formerly monitored variants)
(참조 Tracking of SARS-CoV-2 variants, WHO, 2022.10.28.)

※ 일련번호 <47~50>는 새롭게 분양 목록에 추가된 자원 (붉은색 표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2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01 자원검색 및 문의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 (http://nccp.kdca.go.kr)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연계
- 전화문의(☎ 043-913-4260) 및 전자 우편(nccpbank@korea.kr)

⬇

0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이용

- 분양신청공문 1부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1부
  - 서식참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주(BL3 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1부 또는 연구시설 사용계약서 1부
  - 분석용 핵산(BL1등급 이상):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1부 또는 시설사진(생물안전표지 부착 필수: 고압증기멸균기, 배양기, 생물안전작업대, 보관 장비)

⬇

03 접수, 심사, 통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① 교육, 연구목적 분양의 경우	• 심사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양기간 :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② 교육, 연구목적 외 분양의 경우	• 기탁, 분양자원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분양기간 :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

04 자원인수 및 인수증 제출

- 인수확인(요청)공문 1부
- 병원체자원 인수증 1부
-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1부
-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이용 시 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출력본 제출
  - 우체국 통해 구매가능(사용용도: 행정수수료)
- 인수방법 : 병원체자원은 직접수령이 원칙이나, 일부 병원체는 택배수령 가능(착불)
  - 원본서류(분양 협약서 1부, 정부입인지)는 등기 우편 또는 방문수령 시 직접 제출
  - 바이러스, 항체는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드라이아이스와 박스 준비 필수)
- 자원 분양 시 분양정보시트 제공 : 자원정보, 배양조건, 생물안전등급, 재생법 및 주의사항 등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병원체자원을 조회하고 분양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 후 진행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nccp.kdca.go.kr)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

▶ 사용자 가입 및 권한관련 문의: 043-913-4257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사용자 가입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사용을 위한 시스템 접속(http://is.kdca.go.kr) ▪ 사용자 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사용자 가입 진행 중 기관명 검색이 안될 시, 대표메일로 기관등록 요청 필요(사업자등록증 제출) ☞ 대표메일 nccpbank@korea.kr

⬇

2. 사용권한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화면에서 ☞ “병원체자원 > 분양자 User” 권한신청 후 가입완료 진행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권한승인 필요(소요기간 1일)

⬇

3.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이용	(권한 승인 완료 후)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화면 내 “메뉴보기”에서 온라인분양창구 이용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2021.2.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 물질 취급 시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검사하기 위해 취급하거나, 연구목적으로 바이러스나 핵산을 취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생물안전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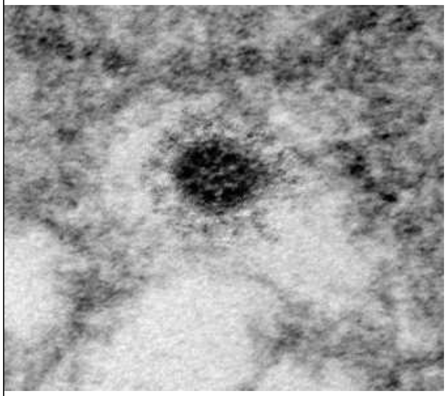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 *Coronaviridae*, 30kb, enveloped, non-segmented, (+)ssRNA
- 감염증상: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 감염경로: 비말, 접촉
- 잠복기: 1~14일(평균 5~6일)
- 실험실 획득감염: 알려진 바 없음
  * SARS-CoV의 경우 싱가폴, 대만, 중국에서 감염사례 확인됨
- 위험군: 제3위험군
  *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에서 제3위험군으로 관리

1. 생물안전 일반 기준

- 검체 등 감염성물질 취급 시 호흡보호구(KF94, N95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등), 일회용 실험가운(lab coat/gown) 또는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PAPR: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전동식공기정화 호흡보호구)
  **필요시 눈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검증된 Class II 이상의 생물안전작업대** (Biological Safety Cabinet, BSC) 내에서 수행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피펫 작업 시 필터가 장착된 팁(filtered tip) 사용

- 원심분리 작업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검체 취급 후 오염된 실험대 및 작업대는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 바이러스 배양, 유전자변형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연구책임자의 위해성 평가 수행 및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 검토를 권고

2.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검체를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 설치된 **Class II 이상의 BSC 내에서 수행**

- 검체의 1차 용기 포장(용기 내 주입, 밀봉, 소독) 및 개봉
-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를 희석 및 분주하는 작업
- 검체 불활화(핵산 추출용 용해액 또는 불활화제 첨가) 작업

* 불활화된 검체는 생물안전작업대 외부에서 취급 가능

- 바이러스(*in vivo* 또는 *in vitro*) 증식을 수반하지 않는 진단・검사 시험
- 세균 또는 진균 증식 여부 확인을 위해 세균 및 진균 배지에 검체 접종
- 감염가능성이 있는 검체로부터 핵산 추출
- 현미경 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또는 열 고정 작업 및 준비
- 원심분리를 위해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빼내는 작업

* 원심분리기 사용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불활화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감염된 조직 검체 취급

* 감염된 조직 검체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BL3 수준의 개인보호구 착용

-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를 위해 1차 용기(검체)를 개봉하는 작업

* 1차 용기(검체 튜브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BSC 외부에서 수행 가능

○ **불활화된 검체 취급 등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수행 가능

-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시험, 생화학적 분석, 항원 검출 시험

* 정제된 핵산, 단백질 등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에 한해 생물안전 1등급(BL1) 실험실에서 가능

- 세균 및 진균 배지에서 검체 배양 및 관련 시험검사(routine examination)
- 화학물질 또는 열 고정된 검체의 전자현미경 분석
- 추가 실험이 필요한 이송용 검체의 포장(1차 포장 및 1차 포장용기 소독 완료된 검체 대상)

○ **바이러스 배양 등 SARS-CoV-2를 직접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실험실에서 수행

- 바이러스 접종, 배양, 분리, 역가 측정, 단백질 정제, 동결건조, 유전자 재조합실험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추출 또는 합성한 바이러스 RNA 전체 염기서열(whole genome)을 이용하여 세포 배양 등 바이러스 증식이 가능한 실험
- 바이러스 배양액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또는 세포 추출물)의 불활화 작업

* 생화화적 분석, 혈청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을 위해 배양된 바이러스의 불활화 작업

(주요 유의사항)

- 눈 보호구 및 KF94, N95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등) 사용 권고

*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밀착 여부 확인

- 취급자는 병원체의 특성 등을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 숙지 및 준수
- 취급자에 대한 상시 건강 모니터링 및 비상시 사고대응절차 마련
- 감염동물 실험 시 PAPR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 반드시 착용
- 실험에 사용된 물품은 멸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

○ **실험대 및 장비의 소독 작업**

- 70% ethanol, 0.5% hydrogen peroxide 또는 0.1% sodium hypochlorite(염소 농도 0.1%, 1,000ppm) 1분간 반응 처리 및 그 외 일반적인 바이러스 살균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등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

* 환경부에서 허가된 방역용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소독제의 희석 배율, 접촉 시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 사항을 따름

- 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폐기

3. 검체 및 병원체의 포장 및 수송

○ 검체 포장 방법

- 환자 및 의심환자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라 **3중 안전포장**
-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 등)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 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기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 내 여러 개의 1차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전체 검체의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를 넣고 수송 중 임의의 충격에 1차 용기들이 서로 부딪혀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충격완화제를 넣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함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금(또는 밀봉) 후 3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는 95kpa 내압, 방수 및 누수 방지 용기 사용

- 검체 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및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을 나타내는 **UN 3373 표식**
- 수송용기 재사용 시 소독방법

* **재사용할 수 없는 수송용기**: 1차 용기의 내용물(검체)로 오염되었거나, 손상 또는 훼손된 2차 또는 3차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용기는 즉시 고압증기멸균 등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폐기

· 2차 용기 소독방법: 70% ethanol 또는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 또는 1,000ppm)로 균일하게 분무 또는 침지 후 1분간 반응 처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염소는 피부 등 인체 독성이 강하므로 장갑 착용 및 환기 등 작업 시 유의

· 3차용기의 경우, 용기 외부에 기록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삭제 후 재사용

○ 병원체 포장 방법

- 바이러스 배양액은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20)에 따라 **3중 안전포장**

* 포장 방법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 내 카테고리 A 포장 방법(p17) 준수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 및 **UN2814 표식**

○ 수송 시 유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검체 및 병원체 수송 담당자 지정

* 수송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비상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수행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 준수

4. 기타 사항

○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따름

○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SARS-CoV 및 MERS-CoV 취급 기준을 따름

5. 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043-719-8041, 8044, 8057)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첨부 1>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 그림1. 감염성물질 3중 포장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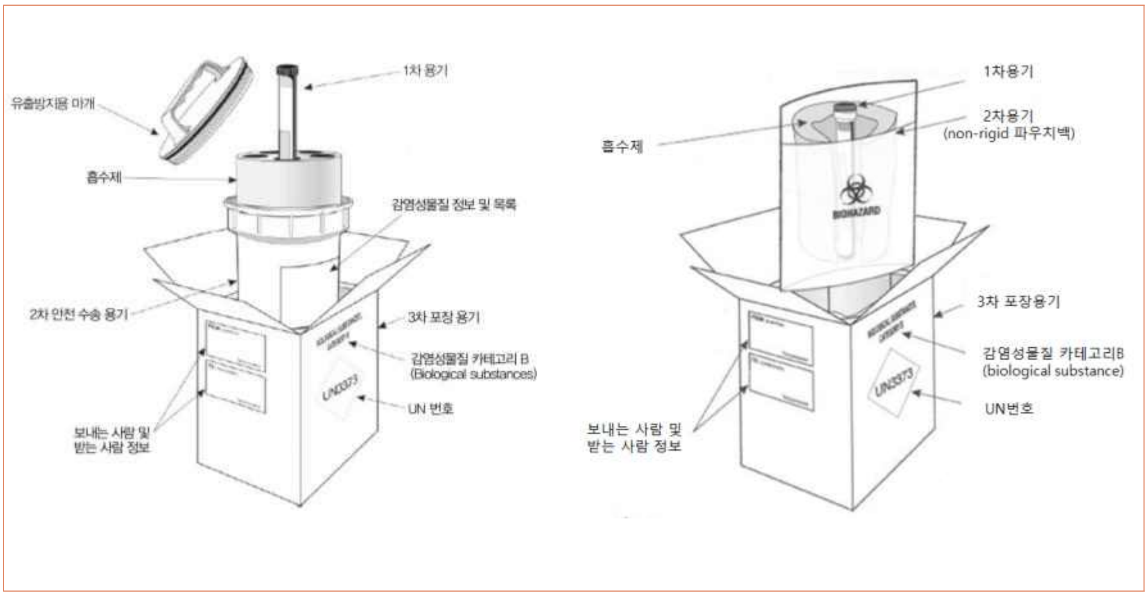

< 그림2.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첨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물안전 Q&A

Q1.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정제된 핵산의 분석 작업도 BL2 실험실에서 해야 하나요?

☞ 바이러스가 포함된 검체 또는 배양물에서 핵산만 정제하여 분리한 후 염기서열 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실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안전 1등급(BL1) 실험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Q2. 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를 개봉하려면 어디에서 하나요?

☞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의 검체가 담긴 용기의 뚜껑을 열 때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자의 안전을 위해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 내에 검증된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3. 눈 보호구는 언제 착용하나요?

☞ 생물안전작업대(BSC) 외부에서 검체를 취급과정에서 검체가 튈 수 있는(splash) 작업(교반, 초음파 처리, 피펫팅 등)을 할 때 취급자의 눈 점막을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이나 얼굴을 가리는 안면보호구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혈액검사 등 진료목적의 검체 검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혈액, 혈청, 소변 검체 등으로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등)를 실시할 때는 일반적인 임상 검체와 동일하게 표준주의를 실시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검사를 위해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 전처리 과정(검체가 든 튜브(1차 용기) 개봉, 도말제작 등 시료 준비 등)은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 참조)

다만,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검사·시험 또는 1차 용기(검체 튜브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 내에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실시하여도 됩니다.

Q5. 검체 수송에 사용한 2차 용기를 재사용하려고 소독용액에 넣어 소독하였습니다. 사용한 소독액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 사용한 소독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액상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참고자료>

1. Laboratory biosafety guidance related to coronavirus disease(COVID-19). Interim guidance. 13 May 2020. WHO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laboratory-biosafety-guidance-related-to-coronavirus-disease-(covid-19)

2. Interim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s for Handling and Processing Specimens Associated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Jan. 6, 2021. CDC, U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lab/lab-biosafety-guidelines.html

3. Persistence of coronaviruses on inanimate surfaces and its inactivation with biocidal agents. Günter Kampf, Daniel Todt, Stephanie Pfaender, Eike Steinmann,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Available online February 6, 2020.
https://doi.org/10.1016/j.jhin.2020.01.022

4. Inactivation of surrogate coronaviruses on hard surfaces by health care germicides. R.L. Hulkower, L.M. Casanova, W.A. Rutala, D.J. Weber, M.D. Sobsey, Am J Infect Control, 39 (2011), pp. 401-407

5. Chemical disinfection of non-porous inanimate surfaces experimentally contaminated with four human pathogenic viruses. S.A. Sattar, V.S. Springthorpe, Y. Karim, P. Loro, Epidemiology and Infection, 102 (1989), pp. 493-505

6.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제2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위원회, 질병관리청 감염병분석센터)